

## Ⅱ . 정정보도청구사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의제자백하였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전주지방법원 1997. 4. 18.자 판결 (96가5949)

### 事實概要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1997년 4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인 서\_\_\_\_외 24인이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시 예산을 부당하게 승인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남원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이라고 본다”며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피고 남원신문이 1996년 5월 31일자 등에 위 사건 기사를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1996년 7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96전북중재7)을 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이익들을 고려하여 중재부 직권으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고 시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유감’이라는 취지의 정정보도게재를 결정했으나 남원신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判決文

사 건 : 96가5949 정정보도

- 원 고 : 1. 서   
남원시
2. 노   
남원시
3. 강   
남원시
4. 이   
남원시
5. 조   
남원시
6. 하   
남원시
7. 이   
남원시
8. 형   
남원시
9. 허   
남원시
10. 백   
남원시
11. 유   
남원시
12. 정   
남원시
13. 인   
남원시
14. 김   
남원시
15. 양   
남원시

16. 윤 [ ]  
 남원시 [ ]
17. 김 [ ]  
 남원시 [ ]
18. 공 [ ]  
 남원시 [ ]
19. 조 [ ]  
 남원시 [ ]
20. 오 [ ]  
 남원시 [ ]
21. 주 [ ]  
 남원시 [ ]
22. 김 [ ]  
 남원시 [ ]
23. 김 [ ]  
 남원시 [ ]
24. 소 [ ]  
 남원시 [ ]
25. 김 [ ]  
 남원시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피 고 :** 주식회사 남원신문  
 법인등기부상 주소 남원시 [ ]  
 송달장소 남원시 [ ]  
 대표이사 장경희

**변론종결 :** 1997. 4. 4.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남원신문'의 제1면 기사란 중 우측 가운데 부분에 가로 10cm, 세로 12cm의 크기로, 그 상단 위쪽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특호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위 제목 다음 줄에는 『'95 남원시 2회 추경예산 의결 관련 의원들 '의혹없음' 밝혀져』라는 소제목을 제4호 고딕

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며,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기제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6호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가로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제2기제와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남원신문' 제1면 기사란 중 우측 가운데 부분에 세로 5단의 크기로, 제목 『정정보도문』은 특호 고딕체 활자로 우측 중앙에 세로로, 『'95 남원시 2회 추경예산 의결 관련 의원들 '의혹 없음' 밝혀져』라는 소제목은 제4호 고딕체 활자로 그 좌측이 세로로, 보도문은 본문 활자로 위 소제목의 좌측에 게재하여야 한다 및 주문 제2항.

**이 유 :** 1.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지인 '남원신문'은 아래와 같이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여 남원시의회의 의원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1996. 5. 31.자 제1면에 『전북도경찰청 이  시장 내사 4개월째 의혹 증폭, 시정 "흔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원시의회의 의원들이 1995년도 남원시 추경예산을 부당하게 승인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또 같은 해 6. 7.자 제2면에 『남원시민의 명예를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남원시가 업무추진비를 변칙으로 지출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남원시의회가 연말이 불과 3~4일밖에 남지 않은 12. 26. 예산을 승인하여 의혹을 사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주문 제1항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면 원고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간접강제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8.

재판장 판사 김 용 현  
판사 차 문 호  
판사 조 윤 희

### **<별지 제1> 정정보도문**

본보는 1996. 5. 31.자 1면에 『전북도경찰청 이 시장 내사 4개월째 의혹 증폭, 시정 “흔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1995년도 남원시 추경예산을 부당하게 승인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 같은 해 6. 7.자 제2면에 『남원시민의 명예를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남원시가 업무추진비를 변칙으로 지출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남원시의회가 연말이 불과 3~4일밖에 남지 않은 12. 26. 예산을 승인하여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 **<별지 제2> 정정보도문(원고들이 게재를 구하는 것)**

· 제목 : 정정보도문  
· 부제목 : 『'95 남원시 2회 추경예산 의결 관련 의원들 '의혹 없음' 밝혀져』  
· 내용 : 본보는 1996. 5. 31.자 1면에 『전북 도경찰청 이  시장 내사 4개월째 의혹 증폭, 시정 “흔들”』이란 제목아래 남원시가 지난해 12. 21.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마치 부당하게 예산승인을 함으로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또한 같은 해 6. 7.자 제2면에는 『남원시민의 명예를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아래 『공개질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부제목과 함께 연말이 불과 3~4일밖에 남지 않은 12. 26. 예산승인을 한 것에 대해 의회가 사전에 변칙지출을 인지하고서도 예산을 승인하여 의혹을 사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모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기에 정정보도한다. 따라서 본지는 남원시의회 의장과 의원 전원에게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는 이같은 미확인 보도가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문제된 프로그램은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하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7. 9. 3.자 판결 (96가합82966)  
서울고등법원 1998. 4. 16.자 판결 (97나47141)

###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998년 4월 16일 모 방송사  
기자인 정○○ 씨가 문화방송 및 '카메라 출동'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은 음주운전 및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  
한 부조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며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화방송은 1996년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출동' 프로그램에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일어나는 취중백태를 기획취재하여 보도하였다. 보도가운데  
모 방송사 기자인 원고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기자인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항의하  
는 과정을 원고의 변조되지 않은 음성 및 얼굴과 함께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방송촬영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된 점을 항의한 것이며,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하였다(96서울중재268).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말한 '소주 2/3가 소  
주 2/3잔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신청인이 음주운  
전을 한 것은 사실이고 '소주2/3병을 마셨다'는 내용에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 1심判決文

**사 건 :** 96가합82966 정정보도

**원 고 :** 정○○(鄭○○)

서울 강남구○○○동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류광현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대표이사 이득렬

2. 홍  (洪 )

같은 곳 기획취재부 내

3. 이  (李 )

같은 곳

4. 조  (趙 )

같은 곳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변론종결 :** 1997. 8. 2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시간에 30초간 화면상의 문자와 대사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1, 12, 14, 15, 16,

17, 1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5, 6, 7, 13, 19의 각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의 기자로서 ○○○ 및 ○○○의 주말뉴스 앵커를 거쳐 현재 위 ○○방송의 보도국 ○○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MBC”라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매일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고, 피고 홍□□은 피고 문화방송의 기획취재부 부장, 피고 이□□는 같은 부 차장, 조□□는 같은 부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위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영하는 「카메라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2) 피고 홍□□은 1996. 10. 14.과 같은 달 15. 위 「카메라출동」에서 방송할 아이템을 결정하기 위해 기획취재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말을 앞두고 증가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의 실태에 관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이□□등 취재기자 3명과 피고 조□□등 카메라 기자 2명을 2팀으로 나누어 같은 달 16.부터 19.까지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취재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 조□□는 소외 박□□ 기자와 함께 같은 달 17. 22:00경부터 24:00경까지 강남경찰서 교통과의 협조를 얻어 강남구 신사동 소재 삼원가든 앞 노상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취재하였는 바, 피고 조□□는 취재차량 안에는 설치된 ENG 카메라와 별도로 직접 8mm 홈비디오카메라를 휴대하고 단속경관의 음주측정 현장 바로 옆에서 촬영을 하였다.

(4) 피고 조□□가 위와 같이 취재를 하고 있던 같은 날 23:00경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의무경찰인 소외 라□□는 서울 ○○가 ○○○호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단속지점을 통과하려는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당시 음주 측정기의 센서가 고장나 있었으므로 우선 육안 및 냄새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음주 합동단속 중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등의 말을 시켜보았는데, 차안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원고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이 되어 원고에게 하차하도록 지시하였다.

(5) 그러나, 원고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오□□경장이 “약주 한잔 하셨습니까. 잠깐 내려와 보세요. 협조바랍니다.”라고 부탁하자, 차에서 내리면서 “예, 죄금 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위 오□□

□이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라고 말하자 “아, 이것보세요. 우리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집에 다왔다고 지금. 나 참 먹지도 않았어요. 소주 3분의 1 먹었다니까.”라고 음주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계속해서 항의하였고, 위 오□이 “어디 계시는 데요?”라고 묻자 “○○방송요, 내 참 불지 않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놈이 아니고 한데. 술먹은 놈을 잡아야지”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아, 소주 3분의 2 먹었다고 애길 했다고. 저 친구한테, 저 양반한테, 그러세요. 내리라고 그러더라구. 무조건”이라고 항의하자 위 오□은 “그냥 가세요. 약주 안드셨어. 안드셨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원고를 돌려보냈고, 위와 같은 영상과 대화는 피고 조□가 촬영한 8mm 홈비디오 카메라 테이프와 취재차량 안에서 촬영한 ENG 카메라 테이프에 그대로 촬영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재를 모두 마친 후인, 같은 달 20. 피고 홍□등 위 기획취재부원들은 위 취재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방송할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고 조□등이 취제한 위 필름을 방영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이□는 위 선택된 자료를 토대로 방송에 나갈 영상자막과 기자의 멘트를 작성하고, 피고 홍□이 위 자막과 기자의 검토를 마친 후, 피고 이□는 위 기사를 녹음하고, 피고 조□는 화면편집을 하여, 최종적으로 같은 날 20:00경 피고 문화방송 보도국장을 비롯한 국장단의 시사회를 거쳐 위 프로그램을 방송하되, 원고가 “○○방송”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의 얼굴을 이른바 모자이크(화면가리기) 처리하여 방송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21:00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출동」 시간에 위 프로그램(이하 위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다.

(7) 위 프로그램은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기자의 멘트와 자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음주 운전 백태”라는 제목하에, 소외 조□ 앵커의 “음주운전의 단속현장에서 드러난 갖가지 취중백태를 이□기자가 고발합니다”라는 멘트 후, 소주 5병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운전자, 경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단속을 면하려는 현역 공군대령 등의 모습을 방영한 다음, 원고가 경찰관과 걸어가는 모습을 화면에 비추면서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피고 이□의 멘트를 내보내고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집에 다왔다고, …소주 3분의 2… 불지 않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놈이 아니고 한데… 먹은 놈을 잡아야지”라는 원고의 목소리와 영상을 내보내면서 “가족끼리 왜 그래…나 기잔데… 소주 2/3병밖에… 먹은 놈을 잡아야지”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고, 그 장면에 이어 갖가지 변명을 늘어 놓으며 선처를 바라는 음주운전자, 뇌물을 제공하고 음주측정을 면하려는 사람, 방송사와의 친분

을 과시하며 선처를 바라는 사람 등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의 갖가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8) 한편, 원고의 음성은 변조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얼굴은 이른바 모자이크 처리(화면가리기)로 변조되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약 0.7초 가량 원고의 얼굴이 모자이크된 화면에서 벗어나며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송되었다.

## 2. 명예훼손의 성립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우선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은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성명, 소속 방송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얼굴도 이른바 모자이크 처리되어 쉽게 식별 가능하지는 아니하나, “모 방송사 기자”라고 자막에 처리하여 원고의 직업이 방송기자임을 특정하였고, 원고는 뉴스 앵커의 경력이 있는 중견 방송인으로서 음성도 중요한 식별의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음성은 변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방송되었고, 원고의 얼굴 모습도 모자이크 처리상의 실수로 인하여 약 0.7초간 변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영되었으므로 체격, 얼굴, 직업, 목소리 등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수가 원고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그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그 방송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멘트 아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기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원고의 행동을 촬영하여 방송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나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

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피고 홍[ ] 같은 이[ ] 같은 조[ ] 및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며 위 프로그램을 방송한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 위법성 조각사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피고들은 위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우리가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는 가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이러한 사적인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10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21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 나. 위 프로그램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위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방송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음주운전의 폐해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두(冒頭)에서 조[ ] 앵커가 언급하듯이 1995년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사고는 전체의 6.2%로 15,000건을 넘고 있고, 경찰의 꾸준한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음주

단속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조리, 예컨대 금품수수 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헤이하게 하는 주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이러한 음주운전 및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비록 공인으로서 경찰관에게 기자의 신분을 알리고 음주측정을 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불과하고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위 프로그램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추한 모습만을 방영하면서 그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도 아니한 원고의 모습을 방영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폭로성, 선정성 보도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사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애당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비난받아야 할 행태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어 제작된 것이고, 원고를 취재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도 피고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포착된 것으로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 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조 제1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공공의 관심사항이 되는 것이고, 다만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티브이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보도국 ○○○차장으로 중견 언론인인 동시에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얼굴도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와 같은 언론인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

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 못지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기자 신분임을 밝히면서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은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 프로그램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영상 및 음성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판단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에 방영된 원고의 모습, 목소리, 발언 내용 등은 편집되지 않은 비디오 테이프 원본에서 일부가 삭제되었을 뿐, 변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프로그램의 영상과 음성은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자의 멘트 및 자막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에서는 편집전의 비디오 테이프의 화면에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피고 이 의 멘트가 추가되고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소주 2/3병밖에, 먹은 놈을 잡아야지”라는 자막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멘트 및 자막은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원고는 음주 측정을 요구받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걸린”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에 반하고, 둘째, 원고는 “소주 3분의 2”를 마셨다고만 말했을 뿐인데 “소주 2/3병밖에”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에 반한다고 다룬다.

(가)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를 정차시키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이 육안이나 후각 등을 사용하여 음주의 정도를 살피거나 또는 그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음주측정기의 사용 또는 혈액채취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해석함이 통상인의 언어습관에도 부합하며, 반드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넘는 음주 측정수치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경우라야만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고,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원고 또한 일부 음주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하차요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비록 그 뒤 음주 측정을 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된 사실이 없다 하여도,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표현하여도,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표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주 2/3병”의 표현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자막으로 “소주 2/3병밖에”라고 표시하고 있으므로, 위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주 3분의 1” 또는 “소주 3분의 2”라고 말했을 뿐, “소주 2/3병”이라고 “병”자를 넣어서 말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되나, 위 “소주 3분의 2”의 의미를 두고 피고는 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소주 2/3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주 3분의 2잔”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티브이 뉴스에서의 자막은 간략하고 단적으로 내용을 표현하여 독자나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도의 내용을 정확하고 강렬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므로 출연자의 언어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축약하거나,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그 표현이 다소 과장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하여도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인상이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처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인 소외 라 [ ]는 원고와의 대화를 통하여 술냄새가 나고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어 음주 측정 및 하차를 요구한 것이고, 원고는 처음부터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조금 마셨다”, “소주 3분의 1 먹었다”, “소주 3분의 2 먹었다”라고 일관되게 술을 마신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원고 주장대로 저녁 먹으면서 소주 3분의 2잔만을 마셨다면 음주운전 측정시간인 23:00경에는 “술을 마셨다”고 시인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충분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 이하로 낮아져 있을 것이므로 즉각 음주측정에 응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방송 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인 바, 당원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결과에 나타난 원고의 발언내용, 태도, 상태, 음주측정 당시의 정황 및 일반인의 통상적인 언어 감정에 비추어 보면 “소주 3분의 2”라는 말의 취지는 “소주 3분의 2병”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막에 “소주 3분의 2병”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9. 3.

재판장 판사 박 일 환

판사 강 한 승

판사 고 재 민

### 제1목록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MBC뉴스데스크는 지난 10월 20일 일요일 「카메라출동」 시간에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화면과 자막으로 모 방송국 기자가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화면으로 방영된 기자는 음주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항의한 것으로 소주 3분의 2병을 마신 것이 아니었고,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관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모습을 방송함으로써 음주운전자인 것처럼 잘못 보도한 사실 및 당사자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한 점을 바로잡습니다.

### 제2목록

· 제목 : 방송내용

· 내용 : 조 [ ] 앵커의 대사 : 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6.2퍼센트로 만오천건이 넘었습니다. 경찰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음주운전입니다. 단속현장에서 드러난 갖가지 취중백태를 이 [ ] 기자가 고발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의 모습을 비추면서)

이 [ ] 기자의 대사 :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엉망으로 취했습니다.

경찰관 : 소주 5병을 드시고 운전하신거예요?

취객 A : 네

경찰관 : 적발되어 여기서 처리되는 게 다행입니다.

이 [ ] 기자의 대사 : 현역 공군대령

취객 B : 너희들이 봐달라.

이 [ ] 기자의 대사 : 경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합니다.

취객 B : 현역 최대령인데, 내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니깐, 그럼 내가 이 [ ], 이 [ ] 총경과 통화할게.

(자막) 현역 최대령인데, 내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니깐, 그럼 내가 이 [ ] (전남 경찰청장), 이 [ ] 총장(경찰청)과 통화할게.

...중략...

(원고가 경찰관과 걸어가는 모습을 화면에 비추면서)

이 [ ] 기자의 대사 :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

신청인 :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집에 다왔다구 지금. 나 참 먹지도 않았어요. ... 내참 불지 않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놈이 아니고 한테, 술먹은 놈을 잡아야지. 아, 소주 3분의 2 먹었다구 애길 했다구...

(원고의 얼굴이 약 0.7초간 잠시 방영됨)

(자막)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소주 2/3병밖에 ... 먹은 놈을 잡아야지  
...후략...

## 2심判決文

사 건 : 97나47141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류광현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 ]

대표이사 이득렬

2. 홍 [ ] (洪 [ ])

같은 곳 기획취재부 내

3. 이 [ ] (李 [ ])

같은 곳

4. 조 [ ] (趙 [ ])

같은 곳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변론종결 :** 1998. 4. 2.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시간에 30초간 화면상의 문자와 대사로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이 유 :** 이 판결에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16.

재판장 판사 김 재 진

판사 황 병 하

판사 조 영 철

### 정정보도문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0월 20일 일요일 「카메라출동」 시간에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화면과 자막으로 모 방송국 기자가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시 화면으로 방영된 기자는 음주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항의한 것으로 소주 3분의 2병을 마신 것이 아니었고, 소주 3분의 2병을 마셨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관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모습을 방송함으로써 음주 운전자인 것처럼 잘못 보도한 사실 및 당사자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한 점을 바로잡습니다. □